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
----------	----

제출일자: 2000. 6. 19.

제 출 자: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져 오전9시이전 입장객수가 늘어남에 따라 입장료를 현행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징수함에 있어 입장시차에 따른 유.무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료 입장객수를 최소화하며 해약에 따른 시설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자의 시설물 등의 훼손과 분실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중 입장권 발매를 현행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를 오전 7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개정)
- 제5조의2(예약 및 해약) 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 통장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해약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전액으로 한다(단, 사용일 기준시간은 오후 1시로 하며, 사용일 전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 한다) (신설)
- 제5조의3(손해배상) 시설물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3. 개정조례안: 따로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5. 기 타: 주민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 달성군공보제109호: 2000.5.10부터 2000.5.29까지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 통장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해약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전액으로 한다.(단, 사용일 기준시간은 오후1시로 하며, 사용일전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3(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조례명: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제5조제1항중 ① <u>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u></p> <p>(신설)</p> <p>(신설)</p>	<p><input type="checkbox"/>조례명: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제5조제1항중 ① <u>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u></p> <p>제5조의2(예약 및 해약) ①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 통장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해약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전액으로 한다.(단, 사용일 기준시간은 오후1시로 하며, 사용일전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 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의3(손해배상) ①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p>